

미국 강림 선교 장학숙 생활규정집

미국 강림선교장학숙 생활규정집

목 차

1. 미국 강림선교장학숙 생활규정	-----1
2. 미국 강림선교장학숙 자치회 규정	-----6
3. 미국 강림선교장학숙 생활규정 부록	-----9

미국 강림 선교 장학숙 생활규정

미국 강림선교장학숙 생활규정

제1조 (명 칭) 이 생활규정의 명칭은 미국 강림선교장학숙 생활규정(이하 “생활규정”)이라 칭한다.

제2조 (목 적) 이 생활규정은 전주강림교회 해외어학연수 및 유학 규정에 의거 미국 LA 강림선교장학숙(이하 “장학숙”) 입숙자의 공중질서 및 해외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입숙자격 및 공과금 납부) 이 교회 해외어학연수규정에 적합하여 통과되었거나 미달된 어학연수생 또는 유학생, 본 교회 출신이 아닌 어학연수생 또는 유학생이 입숙하는 경우에 관한 입숙자격 및 공과금 납부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규정에 통과된 어학연수생 또는 유학생이 입숙하는 경우

- 1) 입숙비는 지불하지 않는다.
- 2) 자치회 공과금은 자치회에서 정한 금액을 매달 말, 자치회 관리자가 지정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한다.

2. 규정에 미달된 어학연수생이 입숙하는 경우

- 1) 입숙비는 지불하지 않는다.
- 2) 당회의 허락을 받은 어학연수생은 “장학숙” 통장에 2백만 원을 예치해 놓았다가 800점 이상의 TOEIC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인인증영어) 성적표를 제출하면 환불한다.
- 3) 자치회 공과금은 자치회에서 정한 금액을 매달 말, 자치회 관리자가 지정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한다.

3. 본 교회 출신이 아닌 어학연수생 또는 유학생이 입숙하는 경우

- 1) 입숙비는 1인실 사용기준 600불, 2인실 사용기준 400불을 해외어학연수원 “장학숙” 통장에 장학숙 발전기금으로 본 교회 당회의 지시에 따라 입숙 전에 6개월분씩 입금한다.
- 2) 자치회 공과금은 자치회에서 정한 금액을 매달 말, 자치회 관리자가 지정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한다.
4. 장학숙 입숙자는 본 교회 해외어학연수원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상의 공과금 (전기세, 수도세, 가스 사용료, 인터넷 사용료 등)에 대한 금액을 공동으로 분배해서 매월 장학숙 내의 자치회 회계에게 납부해야 한다.
5. 전기장판 또는 전기방석 등을 사용한 자는 매월 20달러씩 회계에게 추가 납부해야 한다.
- 6 공과금 납기일을 경과한 자는 1일 경과할 때마다 지체금으로 10달러씩 추가하여 자치회 회계에게 납부해야 한다.

제4조 (입숙 및 퇴숙) 어학연수생 또는 유학생의 장학숙 입숙 및 퇴숙은 아래와 같은 절차에 의한다.

미국 강림 선교 장학숙 생활규정

1. 입숙 시, 호실 배정은 해외어학연수원장(이하“원장”)이 장학숙 관리자의 의견을 참고하여 정하며, 일단 배정된 호실은 입숙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2. 입숙자에게 공용시설물을 대여해줄 때, 관리자와 입숙자는 함께 인계인수서(부록1)를 작성하여 서명날인 한다.(단, 원본은 관리자가 보관하고, 사본은 입숙생이 보관한다.)
3. 만약 입숙자가 인수인계서에 서명날인하기 전에 공용시설물에 확인불명의 손괴문제가 발견되면, 관리자가 자치회 공과금으로 해결한 후 서명날인 한다.
4. 입숙생은 배정된 방의 공용시설물을 함부로 옮겨서는 안 되며, 추가적으로 교체가 필요한 물건이 있을 시, 입숙생 자비로 해결한다.
5. 퇴숙 시, 입숙생은 인계인수서(부록1)에 기재되어 있는 공용시설물의 손괴여부를 확인점검한 후, 최종적으로 관리자에게 확인 점검받아야 한다. (단, 관리자는 확인 점검된 원본을 입숙생에게 주어서 귀국하여, 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제5조 (공용시설물 관리) 장학숙 내 공용시설물은 아래와 같이 관리해야 한다.

1. 전기, 수도, 냉난방 시설 등의 고장 및 공용시설물의 손괴 등은 발견 즉시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관리자는 원장에게 보고한다.
2. 공용시설물을 고의로 파손하거나 분실 시에는 입숙자가 변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각 방에 비치된 공용시설물(책상, 침대, 의자, 스탠드 등)을 입숙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4. 공용시설물은 본 교회의 자산이므로 아껴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유의 및 금지사항) 제1조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모든 입숙자는 아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실내정숙
2. 장학숙의 청소
3. 단정한 몸가짐
4. 시간엄수 및 질서 유지
5. 전열기, 인화물질, 위험물질 등 사용 금지. 단, 노트북, 드라이기 제외
6. 절전 및 절수 실천
7. 흡연, 음주, 도박, 폭행 금지
8. 시설물의 임의 이동, 변형, 손상, 파괴 금지
9. 실외에서 실내화 착용 금지
10. 낙서 광고물의 무단 전시, 유인물 배포 금지
11. 장학숙 내에서 학업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 금지

미국 강립 선교 장학숙 생활규정

12. 장학숙 내에서 연애 금지
13. 타인 명의 우편물의 개봉 금지
14. 장학숙 내에서 애완동물 사육 금지
15. 퇴숙 시 방 청소, 사용한 이불 세탁 및 정리 정돈 엄수
16. 기타 단체생활에 불쾌감을 주는 행위 금지
17. 미국 내에서 불법적으로 취업하는 행위 금지

제7조 (어학연수적응프로그램) 어학연수생의 원활한 미국생활 적응과 에피소드를 통해 자신감과 도전정신을 배양하여 어학연수 효과를 배양시키기 위해 아래와 같은 내용의 프로그램을 수행한다.

1. 어학연수적응프로그램은 입숙생이 장학숙에 입숙한 익일부터 5주에 걸쳐서 부록2의 기준에 따라 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2. 수행결과보고서는 한글 파일로 최소 US Letter 1장 이상을 작성해야 하며, 이를 원장에게 매주 프로그램 종료일 후 2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미국시간 매 일요일까지, 한국시간 월요일까지)

제8조 (어학연수프로그램) 장학숙에 입숙한 어학연수생(이하 “연수생”)은 어학원의 ESL 또는 TOEFL과정, College의 ESL 등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준수하며 공부한다.

1. 어학연수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입숙생은 아침 9시 이전에 장학숙에서 퇴실한다.
2. 질병 및 기타 사고로 인한 결석은 사전에 장학숙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만약 어학연수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입숙생이 다른 학교로 Transfer를 하려면, 먼저 관리자 또는 고문(Adviser)에게 보고하고 상담한 후, 장학숙 관리자 또는 고문이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 허락 받은 후에 가능하다.
 - 1)Transfer 가능한 경우는 재학중 어학원에서 상위 대학 프로그램 (2년제 Community College 또는 2년제 College 또는 4년제 University)을 이수코자 희망할 때.
 - 2)Transfer 불가능한 경우는 어학원에서 다른 어학원으로 Transfer하려고 할 때.

제9조 (성적표 제출) 입숙생은 재학중인 어학원 또는 대학의 성적표와 TOEIC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인인증영어) 성적표를 매학기 아래와 같은 기간 내에 고문을 통해서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입숙생은 재학중인 어학원 또는 대학의 성적표(출석 및 성적)를 매학기 종료 후 1개월 이내. (단, 해당학기의 출석률 및 성적이 각각 90%이상 이어야 하고, 이에 미달하는 자는 부록4 별점기준에 따라 벌금 50달러의 벌금을 납부해야 함.)
2. 입숙자격기준에 따른 입숙생의 TOEIC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인인증영어) 시험 응시기일은 장학숙에 입숙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각 기준 개월 10일 이내.

미국 강림 선교 장학숙 생활규정

- 1)한국에서 600점 이상의 TOEIC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인인증영어) 시험 성적표를 제출하고 입숙자격을 통과된 연수생
 - (1)장학숙 입숙 후 6개월 차와 9개월 차가 되는 시점에 TOEIC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인인증영어) 시험에 응시해야 하며, 부록3에 합당하는 성적을 제출해야 함.
- 2)한국에서 TOEIC(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인인증영어)시험 성적표를 미제출했거나 입숙자격에 미달된 연수생
 - (1)장학숙 입숙 후 3개월 차, 7개월 차와 11개월 차가 되는 시점에 TOEIC(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인인증영어) 시험에 응시해서 부록3에 합당하는 성적을 제출해야 함.
3. 2항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연수생은 부록3 벌금규정에 근거해서 벌금 50달러를 납부해야 한다.

제10조 (간담회 개최) 어학연수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잘 수행되도록 하기 위해 고문은 아래와 같이 매 2주에 한 번씩 연수생들과 간담회를 실시한다.

1. 어학연수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입숙생은 (어학원 ESL 또는 TOEFL과정, College ESL) 원장이 추천해서 당회장이 임명한 고문의 간담회에 응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하는 연수생은 부록4 벌점기준 (대청소 및 전체모임에 비협조적인 자) 벌금 10달러를 부과한다.
2. 고문은 매 2주에 한 번씩, 어학연수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연수생들과 간담회를 통하여, 연수생들의 영어성적결과보고 등의 상담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
3. 고문은 간담회를 통해서 얻은 자료, 피드백 결과, 참석인원 등 상담결과를 해외어학연수원장에게 보고한다.

제11조 (규정 위반) 생활규정을 위반해서 퇴숙당한 입숙자는 아래와 같은 각종 수혜혜택을 제한한다.

1. 생활규정을 위반해서 퇴숙될 경우, 입숙자 본인, 가족, 보증인 및 그 가족은 향후 10년간 미국 강림선교장학숙 이용 및 교회에서 지원하는 각종 수혜혜택을 받을 수 없다.
2. 제9조를 위반하는 연수생은 영어성적이 상승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외박과 여행을 제한한다.
3. 장학숙 관리자는 장학숙에 입숙하여 생활하는 모든 입숙생 (어학연수생 또는 유학생) 이 벌점기준 (부록4)을 위반 시, 해외어학연수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1)벌점기준의 퇴숙처분에 해당하는 자는 원장이 퇴숙처분시키거나 예치금에서 벌금을 환수한다.
 - 2)퇴숙처분 기준
 - (1)부록4의 퇴숙처분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자.
 - (2)3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자
 - 3)벌금부과 대상
 - (1)부록4의 범칙금 부과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자.

미국 강림 선교 장학숙 생활규정

제12조 (부 칙)

이 규칙은 201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0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1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1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미국 강림 선교 장학숙 자치회 규정

미국 강림선교장학숙 자치회 규정

제1조 (명 칭) 이 자치회 규정의 명칭은 미국 강림선교장학숙 자치회 규정(이하 “자치회규정”이라고 함)이라 칭한다.

제2조 (목 적) 본 자치회 규정은 전주강림교회 해외어학연수 및 유학 규정에 의거 미국 LA 강림선교장학숙 입숙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자치회 설치) 본 규정은 “미국 강림선교장학숙 생활규정”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설치한다.

제4조 (구 성) 자치회는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

1. 강림선교장학숙(이하 “장학숙”) 자치회 임원은 관리자 1인, 고문 1인, 회계 1인으로 구성한다.
2. 자치회 관리자는 원장이 임명하고, 고문은 신앙심과 통솔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선배 중에서 원장이 추천해서 당회장이 임명한다.
3. 자치회 회계는 장학숙에 입숙한 입숙생 중 1인을 장학숙 관리자가 임명한다.
4. 차기 임원으로 임명 받은 자는 각 임무와 업무를 1달 이내에 각각 인계 인수하여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5조 (임원의 직무와 권리) 장학숙 자치회 임원의 직무와 권리는 아래와 같다.

1. 관리자는 입숙자들을 대표한다. 만약 입숙자들이 판단하기에 관리자가 원장이 지시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입숙자들은 원장에게 건의하여 관리자를 교체할 수 있다.
2. 관리자는 도난, 상해 및 기타 사고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원장에게 보고한다.
3. 관리자는 장학숙 입숙생들의 생활에 필요한 건의사항 및 의견을 수렴하여 원장에게 보고한다.
4. 고문은 2주에 한 번씩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개최일시는 고문과 어학연수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연수생들과 조율을 통해 개최한다.
5. 고문은 간담회에서 어학연수프로그램을 이수하는 학생들의 성적결과보고 및 TOEIC (또는 공인인증영어) 시험 성적표를 확인할 권리가 있다. (단, 필요하다면, 관리자도 성적결과 보고 및 TOEIC (또는 공인인증영어) 성적표를 확인할 수 있다.
6. 관리자 및 고문은 원장으로부터 지시 받은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결과보고 해야 한다.
7. 회계는 관리자로부터 지시 받은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결과보고 해야 한다.

미국 강림 선교 장학숙 자치회 규정

제6조 (임원의 부재 시) 관리자 및 고문이 부재 시, 그 임무를 아래와 같이 일임한다.

1. 관리자가 부재 시, 관리자의 임무는 고문에게 일임한다.
2. 고문이 부재 시, 고문의 임무는 관리자에게 일임한다.
3. 관리자 및 고문이 부재 시, 회계가 임무를 일임한다.

제7조 (입숙생의 의무와 권리) 강림선교장학숙에 입숙한 어학연수생, 유학생 또는 기타 연수생은 반드시 아래와 같은 의무와 권리를 수행해야 한다.

1. 어학연수생, 유학생 또는 기타 연수생들의 장학숙 생활에 필요한 건의사항 및 보고사항은 관리자를 통해 원장에게 보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어학연수생, 유학생 또는 기타 연수생들의 교육부분에 있어 필요한 건의사항 및 보고사항은 본 교회 당회에서 지정한 고문을 통해 원장에게 건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장학숙에 도난, 상해 및 기타 사고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원장에게 보고한다.
4. 장학숙 입숙생은 매일 밤 10시 이전에 귀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별한 경우는 관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관리자는 원장에게 보고한다.
5. 장학숙 내부에 물건 반출 및 반입은 장학숙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장학숙 관리자는 이를 원장에게 즉시 보고한다.
6. 입숙생이 여행으로 인해 외박할 경우, 여행준비보고서를 원장에게 서면으로 여행 2주 전에 제출해야 하며, 승인 여부에 따라야 한다.
7. 여행종료 후에는 여행결과보고서를 여행에서 돌아온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원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8. 입숙생은 장학숙 생활규정 제6조를 준수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한 입숙생이 있다면, 부록4 벌점기준에 따라 벌금을 자진해서 자치회 회계에게 납부해야 한다.
9. 입숙생은 장학숙 생활규정 제7조에 따라 재학중인 어학원의 성적표와 TOEIC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인인증영어)시험 성적표를 고문을 통해서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0. 아래에 해당되는 학생만 예외로 하고, 모든 입숙생은 당회의 허락 없이 어떠한 취업 또는 일도 해서는 안 된다.
 - 1) 유학생 신분(2년제 College 또는 4년제 University 이상) Social Security Number가 학업수행에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 DOS(학교 취업센터 카운슬러)를 통해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 받은 학생.
 - 2) 2년제 College 또는 4년제 University 졸업 후, OPT(합법적으로 주어지는 기간 1년 내외) 상태를 유지한 학생.

제8조 (부 칙) 이 규정은 미국 강림선교장학숙 생활규정이 시행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미국 강림 선교 장학숙 규정집 부록

부록 1

인 계 인 수 서

미국으로 어학연수를 온 학생이 LA 강림선교장학숙의 Room에 입숙하거나 퇴숙하려면, 반드시 입·퇴숙 전에 회장 입회하에 아래 항목에 대한 이상 유무 상태를 확인점검하고 인계인수서에 서명날인한 후 입·퇴숙하여야 한다.

만약 입숙자가 퇴숙하려고 할 때 입숙 전 확인 점검한 항목의 상태와 다르면, 입숙자 본인이 원상태로 복구해놓거나 충분한 금액으로 변상하고 퇴숙해야 한다.

번호	항 목	이상 유 무		비 고
		유	무	
①	침대, 매트리스			
②	이불, 베개			
③	매트리스카버			
④	책상, 의자			
⑤	전기스탠드, 전구			
⑥	블라인더 커튼			
⑦	유리창, 방충망			
⑧	빨래건조대			
⑨	서랍장			
⑩	실내등 전구			
⑪	바닥, 창문틀 청소			
⑫	이불, 베개 세탁			
⑬	옷걸이행거			
⑭	실린더, 열쇠			
⑮	욕조커튼청소(해당자)			
⑯	화장실 청소(해당자)			

위와 같은 항목에 대한 이상 유무 상태를 확인점검하고 인계인수서에 서명날인 합니다.

20 년 월 일

인 계 자(회 장)

성명

서명

인 수 자(입숙자)

성명

서명

20 년 월 일

인 계 자(퇴숙자)

성명

서명

인 수 자(회 장)

성명

서명

어학연수 적응프로그램

1. 목적

신입 어학연수생의 원활한 미국생활 적응과 에피소드를 통해 자신감과 도전정신을 배양하여 어학연수 효과를 배양시키는데 있다.

2. 프로그램 적응기간 : 5주

3. 수행지침

- 1) 모든 프로그램은 미국 도착 이후부터 시행한다.
- 2) 수행한 결과물은 카톡과 이메일을 통하여 어학연수원장에게 검토받는다.
(미국시간 매 일요일까지, 한국시간 월요일까지)
- 3) 5주간의 프로그램을 원활히 수행하고, 귀국 후 6개월 이내에 TOEIC 800 점 이상의 점수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예치금을 지급한다.
- 4) 수행보고서 작성은 역사적 의미, 느낀 점, 도전받은 점 등을 기록해야 한다.

4. 세부 적응프로그램

1주 수행보고서 (A4 1장 내외)

집 주변 마켓의 멤버십 혹은 할인카드 만들기.

METRO 교통카드 만들기.

City Bank Student Account 만들기.

지하철 타고 Union Station 가서 기념촬영하고 LA Map 구매하기.

2주 수행보고서 (A4 1장 내외)

대한민국민회 견학모습 인증 샷

USC 교정에 있는 도산 안창호선생 생가를 배경으로 기념촬영.

UCLA의 상징인 곰 동상 앞에서 기념촬영.

Santa Monica Beach를 배경으로 기념촬영.

3주 수행보고서 (A4 1장 내외)

미국 강림 선교 장학숙 규정집 부록

Glendale Americana Mall에 있는 황금빛 조각상과 기념촬영.

Glendale Central Library 내에 있는 위안부 소녀 동상 기념촬영.

4주 수행보고서 (A4 1장 내외)

Pink's Hot Dogs에서 Hot dog 시식 및 기념촬영.

The Grove Mall에서 Mall 내 운행되는 기차(무료) 탑승하고 기념촬영.

5주 수행보고서 (A4 2장 내외)

학원 혹은 교육기관에서 사귄 친구들과 사진촬영(학생 포함 4인 이상)

사진에 있는 학생들의 이름, 나이, 국적, 그들에 대한 소개

※ 모든 스케줄은 친구(영어를 사용하는 외국인)와 함께 혹은 학생 혼자 진행해야 하며, 매주 수행보고서를 어학연수원장에게 이메일로 보내고, 최종적으로 미국 입국 후 5주 동안 생활한 소감문을 포함 정리해서 이메일로 보낸다. (반드시 귀국 전 어학연수보고서 작성 내용에 삽입할 것)

5. 적응프로그램 작성자의 코멘트

어학연수 초기에, 많은 학생들은 미국이란 새로운 환경에 들며 조금은 과도하게 외국인 혹은 한국인들과 어울려 불필요한 지출이 많았다. 또, 3~4개월이 지날 무렵에는 1년 후 한국에서의 생활,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로 학원 출석 외의 활동에 무관심하거나 무기력함으로 인해 시간을 낭비하는 모습들이 있어 왔다.

위의 5주에 걸친 스케줄은 학원 혹은 기타 어학 학습과 겹치지 않으면서 미국문화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지난 몇 년간 장학숙을 거쳐 간 학생들의 어학연수 초기 문제점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문제점이 발생할 시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겠으니 적극 협조 바란다.

6. 기대효과

어학연수 시작 시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고취시킬 것이며, 낯선 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또한 어학연수를 시작하는 기간에 적응 프로그램을 수행함으로써, 자칫 어학연수 초반 부적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연수생의 태만 혹은 미비한 활동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 강림 선교 장학숙 규정집 부록

부록 3

입숙자격에 통과된 연수생		입숙자격에 미달된 연수생	
1차 시기	기존 점수에서 50점 이상	1 차 시기	600점 이상
2차 시기	1차 시기 점수에서 30점 이상	2 차 시기	아래 참조
위의 점수는 TOEIC시험성적 기준. 또는 공인인증영어시험점수 환산표		3 차 시기	아래 참조
		4 차 시기	아래 참조

1. 각 점수 적용법 (입숙 자격에 통과된 연수생)

- 1) 기존점수 600점 이상 및 670점 미만: 다음 시기에 50점 이상
- 2) 기존점수 670점 이상 및 770점 미만: 다음 시기에 30점 이상
- 3) 기존점수 770점 이상: 기존점수를 초과해야 함.

2. 각 점수 적용법 (입숙 자격에 미달된 연수생)

- 1) 1차 시기: 600점 이상
- 2) 2차 시기: 1차 시기 600점 이상 및 670점 미만, 다음 시기에 50점 이상
- 3) 3차 시기: 2차 시기 670 이상 및 770점 미만, 다음 시기에 30점 이상
- 4) 4차 시기: 3차 시기 770점 이상, 기존점수를 초과해야 함.

3. 예외사항

- 1) 기존점수 및 각 시기가 770점을 넘은 연수생은 위의 1항-3번으로 적용한다.
- 2) 각 시기의 기준을 초과하는 점수를 받은 연수생은 그 다음의 기준으로 적용한다.

4. 점수에 따른 벌금

- 1) 각 시기 기준에 미달하는 연수생은 벌금 50달러를 부과하고, 원장과 부모님에게 서면으로 관리자를 통해 보고한다.
- 2) TOEIC시험 자체를 불이행하는 연수생은 벌금 300달러를 부과하고, 원장 및 부모님에게 서면으로 관리자를 통해 보고한다. 또한 계속해서 불이행한 연수생은 장학숙을 퇴숙한다.
- 3) 벌금 납부는 성적발표 후, 1개월 이내에 회계에게 납부해야 하며, 납부된 금액은 해외 강림교회 장학회에 귀속된다.

미국 강림 선교 장학숙 규정집 부록

부 록4

벌점 기준

내	용	조치사항
1. 절도 행위를 한 자		퇴 숙
2. 기물을 파손하거나 화재를 일으킨 자		퇴 숙
3. 합법적인 신분이 아닌 상태로 일을 한 자		퇴 숙
4. 중간보고서, 결과보고서 및 여행관련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		\$500
5. 장학숙에서 연애하거나 원장 허락 없이 이성 친구를 데려온 자		\$250(경고)
6. 당회에서 지정한 교회에 출석하지 않은 자		\$50(경고)
7. 장학숙 내에서 흡연한 자		\$50(경고)
8. 장학숙 내에서 도박한 자		\$50(경고)
9. 소란행위를 하거나 고성으로 언쟁한 자		\$50(경고)
10. 기합, 구타 및 폭력 행위를 한 자		\$50(경고)
11. 9시 전에 어학원 (I-20유지)을 가지 않은 자		\$50(경고)
12. 어학원 (I-20 유지) 성적 및 출석률이 90% 미만인 자		\$50(경고)
13.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은 자		\$50(경고)
14. 단체생활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한 자		\$50(경고)
15. 세면대에서 머리 감은 자		\$50(경고)
16. 방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정받지 않은 방으로 옮긴 자		\$50(경고)
17. 사전에 관리자에게 허락받지 않고 외부 사람을 숙식시킨 자		\$25
18. 가스레인지 사용 후 불을 끄지 않은 자		\$25
19. 관리자 및 고문의 정당한 지시에 불복한 자		\$25
20. 관리자에게 미리 보고하지 않고 무단 외박한 자		\$25
21. 적은 양의 세탁물을 넣고 세탁하는 자		\$25
22.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채로 설거지를 하는 자		\$25
23. 관리자의 허가 없이 밤 10시 이후에 귀가한 자		\$25
24. 분기별 보고와 학기종료 후 성적을 보고하지 않은 자		\$25
26. 허가 없이 전열 기구를 사용한 자		\$25
27. 외출 및 취침 시 전등을 켜 놓은 자		\$10
28. 단체생활에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한 자		\$10
29. 대청소 및 전체 모임에 비협조적인 자		\$10
30. 사전 허락 없이 타인의 물건을 사용한 자		\$10
31.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지 않은 자		\$10

※ 해당 벌점기준을 위반하면, 벌금은 위반일 10일 이내에 회계에게 자진해서 납부한다.